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37
----------	-------

발의연월일 : 2026. 2. 3.

발 의 자 : 김성원 · 고동진 · 박충권
임종득 · 박덕흠 · 안철수
김미애 · 한지아 · 최보운
유용원 · 백종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출점 및 영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유통산업구조가 크게 변하였고, 기존의 규제가 당초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쿠팡 등 일부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만 강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온·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대규모점포(SSM) 가맹점 규제 제외(안 제2조제4호다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소상공인)가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함.

나. 온라인 영업에 대한 규제 적용 배제(안 제12조의2제1항)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온-오프라인 유통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다. 영업시간 제한 규제 폐지(안 제12조의2제2항)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보장하여 온-오프라인 유통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라.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 개선 및 자율화(안 제12조의2제2항)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고, 의무휴업일의 수와 요일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협의회 의견 청취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마. 규제 일몰기한의 세분화 및 연장(안 제48조의2)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별 일몰 기한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SSM(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규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관련 규제: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를 “체인사업의”로, “점포”를 “점포 중 직영점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영업시간의 제한”을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을 “의무휴업일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을 “대규모점포등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에”를 “제1항에”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매월 이틀 이내의”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협의회 의견 청취하여야 한다.

1. 의무휴업일 수

2. 의무휴업일의 요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4제1호 전단 중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제2호에”를 “제12조의2제1항에”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4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조제1항”을 “제7조의5제1항, 제8조제1항”으로, “제2항”을 “제3항, 제8조의3,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1항 ·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 제3항 · 제4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36조제1항 · 제6항, 제37조제1항, 제44조, 제44조의2제1항 · 제4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제3항”으로, “부분, 제8조제3항 · 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를 “부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2조의2, 제13조의4 및 제52조제1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u>체인사업</u>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u>체인사업</u> 의 형태로 운영하는 <u>점포</u>	다. ----- ----- ----- <u>체인사업</u> <u>의</u> ----- <u>점포</u> <u>중 직영점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한다)</u>
5. ~ 16. (생략)	5. ~ 16.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u>영업시간의 제한</u>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u>제한</u> 등) ① ----- ----- ----- -----

의무휴업일을

대규모점포등과 대형마트
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삭 제>

<삭 제>

② -----
-----제1항에-----의무휴업
일을 지정하는 경우 매월 이틀
이내의-----의무휴업일을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4(영업정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및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의무휴업일 수

2. 의무휴업일의 요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13조의4(영업정지) -----

-----.

1. 제12조의2제1항에-----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 이 경우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

2. (생략)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후단 삭제>

2.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① -
-----제7조의5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8조의3,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1항·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36조제1항·제6항, 제37조제1항, 제44조, 제44조의2제1항·제4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제3항-----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52조(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u>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u> 2. <u>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u> ② ~ ④ (생략)	-----<u>부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u>----- --. <u><단서 삭제></u> ② <u>제12조의2, 제13조의4 및 제52조제1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u> ③ <u>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u> ④ <u>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52조(과태료) ① <u>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u>----- -----. <u><삭 제></u> <u><삭 제></u> ② ~ ④ (현행과 같음)
---	--